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9일

의신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의신면 주민사무소 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전 *훈	전 *훈 1996-03-13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1-19